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문 화 복 지 위 원 회

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

문 화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1. 제안경과

○ 본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용예산을 매년 팔당 7개 시·군 분담금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 **사업목적**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04년 ~ 지속추진 중

○ **출연금 개요**

- 지원내용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비용지원
- 2027년 출연금 : 80백만원

※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별 각80백만원 출연

○ **출연대상**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 일반현황

• 설립목적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갈등 중재·조정기구(’03. 11. 출범)

- 구성현황 : 기후부, 경기도, 7개시·군(남양주, 가평, 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 기후부 1차관, 한강유역청장, 물환경정책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7개 시장·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

○ **출연현황**

(단위: 천원)

합계	'04~'19	'20	'21	'22	'23	'24	'25	'26
1,470,000	91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주요 추진내용**

-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협의
- 팔당지역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 추진
 - 수변구역 규제변화에 따른 팔당 상수원 수질영향 분석, 팔당수계 특화발전방안 수립 연구,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어로행위 허용에 따른 수질·생태영향 및 보상방안 연구, 정기간행물 제작 등

○ **기대효과**

- 기후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간의 갈등 중재와 상호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팔당 상수원 지역의 수질보전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 실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환경정책과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환경부 및 경기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2027년도 운영을 위한 우리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협의회는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로,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과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27년에는 수변구역 규제변화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팔당수계 특화발전방안 연구 등 수질보전과 지역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에 관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참여 필요성이 인정됨

○ 검토 결과, 본 출연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과 특별대책지역의 공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주요 연구 및 협의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성과와 출연금 집행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1 관계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의4(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2. 수질의 유지·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환경부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관
2.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부지사
3.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7개 시·군의 시장·군수 각 1명
4.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지방의회 의장 각 1명
5.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주민대표 각 1명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환경부차관
2. 제2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의 부지사
3.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4.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5.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 중 2명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6(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운용예산의 분담) ① 협의회 운용예산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회 참여기관 등에서 지원(출연, 보조 등)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예산 지원금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협의회에 납입하여야 한다.